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4년 11월 8일
- 나. 발 의 자: 최인순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 라. 상정일자: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의 아동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조례가 별도 제정되고,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조 ~ 안 제4조)
-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안 제8조)
- 간사, 지원사업, 협력체계의구축(안 제9조 ~ 안 제11조)
- 비밀의준수, 실비보상, 시행규칙(안 제12조 ~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아동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별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2023.7.6.)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24.)의 제정에 따른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여성폭력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책무를 규정한 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등

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17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 여성가족부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안전실태조사」의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수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성폭력 사안의 민감성과 그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불확실한 안전망에 대한 불안감 등을 피해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여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되어 해당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해당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여성폭력 등 방지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의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은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구체화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시행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어 선순환 구조 체계의 확립 방안이라고 판단됨.
-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안 제4조의 시행계획 등의 평가와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방안, 여성안전 확보 등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활동,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피해자 의 료비 및 자립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자문하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 음.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원을 성별을 고려한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토대를 마련함.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안전망을 촘촘히 한 규정으로 우리 구 현행 사업으로는 지역 내 CCTV와 자치구 관제센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안심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이 안심하 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 회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한편, 여성 및 청소년 안전귀가 지원을 위 해 여성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 등을 실시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 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우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안심마을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음. 이 밖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근처 편의점으로 대피 및 안전귀가를 지원하는 안심지킴이집, 안심택배함, 안심 장비 지원사업,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대여 등의 사업을 통해 여성 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지만 본 조례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방 법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기존 조례에서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따른 여성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 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의 취지 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0
----------	-----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최인순·차인영·전승관

임헌호 의원(4인)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아동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조례가 별도 제정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조 ~ 제4조)

다.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제8조)

마. 간사, 지원사업, 협력체계의구축(안 제9조 ~ 제11조)

바. 비밀의준수, 실비보상, 시행규칙(안 제12조 ~ 제14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등”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폭력,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여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동거인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등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3. 여성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 활동
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5.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6.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여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시설의 대표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경찰·사법 관련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여성폭력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

폭력 등 방지와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등 피해자 긴급보호
2. 불법촬영기기 자가점검 장비 지원
3. 주거시설 개선 및 안심장비 지원
4. 여성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